"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출력한 문서입니다. 관리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청사 주차장 개선 및 정비공사

나. 사업예산 : 632,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60일(예정 공기)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및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연구과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기존 시험설비의 조속한 이전 필요

- 기술원은 「리튬금속 등 배터리 소재·제품에 대한 화재성상 및 소화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테스트베드 구축 예정부지에는 기존 시험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테스트베드 구축에 앞서 해당 설비의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기존 시험설비를 기술원이 매입한 확충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 설비의 안정적인 이전·설치를 위해서는 매입부지에 대한 부지 정지, 우수배수시설, 포장, 옹벽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우선 완료할 필요가 있음.

○ 토목공사 지연 시 테스트베드 구축 일정의 연쇄적 지연 우려

- 본 토목공사는 기존 시험설비 이전을 위한 부지 및 기반여건을 확보하는 선행공정으로, 공사가 완료되어야 해당 부지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구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따라서 토목공사 발주 및 착공이 지연될 경우

「매입부지 토목공사 → 기존 시험설비 이전 → 테스트베드 예정부지 확보 → 테스트베드 구축」의 전체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연구과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출력한 문서입니다. 관리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일정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연구과제 수행 일정 확보를 위한 토목공사의 조기 착공 필요

- 매입부지(주차장 개선 및 정비 공사) 토목공사는 독립적인 시설정비공사가 아니라, 기존 시험설비의 이전을 통해 테스트베드 구축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선행공정임. 본 공사는 토공, 우수배수공, 포장공, 구조물공 및 부대공 등 다수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여건에 따라 공정 진행이 제한되거나 공사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입부지의 토목공사를 조기에 착공·완료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이 본 공사(주차장 개선 및 정비공사)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공사로서, 발주 및 착공이 지연될 경우 시험설비 이전과 테스트베드 구축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매입부지 토목공사를 조기에 착공·완료하고 기존 시험설비 이전 및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시공업체를 신속히 선정하고자 긴급입찰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인)